

「푸른 영상」에 대한 경찰의 심문영역을 그만두고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있는 음반법 즉각 폐되어야 한다 !!!

■ 사건개요 ■

< 1996년 6월 14일 >

- * 08:00 - 11:00 ; 노량진 경찰서 소년계 소속 8명의 형사가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검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푸른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푸른영상이 제작·보관하던 1000개 가량의 테이프를 압수해 갔다.
- * 15:30 - 15:40 ; 노량진 경찰서 소년계 소속 형사 4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한 후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 감독을 연행해 갔다.
- * 17:00 - 17:25 ; 대표 김동원씨가 연행된 직후 오후 5시경, 노량진 경찰서 소년계 소속 형사 3인이 의경 8-9인을 동행하고 들이닥쳐서 촬영 및 편집 기자계 일체를 압수해갔다.
- * 21:00시경 ; 소년계에서 보안계로 넘어가 철야조사를 받음.
- * 22:00시경 ; 김동원 대표 자택으로 보안계 형사들이 압수 수색함.

< 6월 15일 >

- * 보안계의 철야조사가 끝난 후 다시 소년계로 넘어감. 구속 영장 기각 신청 준비.
- * 19:00 - 21:00 ; 민예총 사무실에서 100여명의 영화 관련인들이 대책위를 결성 준비 모임을 가짐. 향후 대응내용과 방식, 이후 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

< 6월 16일 >

- * 01:30 ; 김동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어 석방됨.

■ 민예총 영화위원회와 푸른영상의 입장 ■

1991년에 만들어진 푸른 영상은 그동안 철거민, 여성 문제, 민가협 어머님들, 그리고 양심수 등을 소재로 한 30 여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으며,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푸른 회원」이라는 독특한 회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상업적인 미디어와 국가의 강압적 통제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렇듯 군부 독재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주적 미디어 운동을 전개해왔던 「푸른 영상」에 대해, 이른바 문민 시대에 인신 구속과 테이프 및 기재의 압수라는 극단적인 탄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긴급 구속 사건과 압수 수색의 법적 근거는 6월에 새롭게 발효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작년말 입법단계부터 건강한 창작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조항들 때문에, 민예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민변측에서는 새 법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일반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하에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은 아무런 수정없이 다만 음반의 사전 심의를 없앤다는 것만을 명시한 채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푸른영상과 같은 비영리 비디오물제작단체는 여전히 등록을 해야하는지 등에 관하여 예매한 법규정으로 불안에 떨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한 불안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조항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동일한 조항인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조항은 이미 법원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상태이다. 이렇게 위헌요소가 다분히 있는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조항으로 비영리의 비디오물 제작단체의 대표를 구속까지 하고 비디오물과 관련 기기를 압수해 간 것은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입법예고된 음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국산 비디오물중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푸른영상은 교육단체의 역할도 해 온만큼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푸른영상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시행령이 발효하기도 전에 구속 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김동원 대표의 구속명목이 음비법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계에서의 형식적인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보안계로 넘어가 작품의 반체제적·반정부적 내용에 대해 추궁하는 철야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작품활동을 옥쇄기 위한 계획적인 탄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단법인 민족 예술인 총연합 영화 위원회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김동원 대표의 긴급 구속과 압수수색을 계기로 창작의 자유와 음비법 개폐에 대한 투쟁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 것이다. 이에, 민예총 이하 영화인들은 김동원 대표 구속에 대한 해명과 압수 수색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며, 나아가 반민주적인 비디오 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개폐운동을 벌어나갈 것을 결의하며, 검열 철폐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호소한다.

*** 음비법 개폐를 위한 투쟁기금을 모금합니다.**

서울은행 32007-0381805 윤은정 / 푸른영상 (전화:823-9124)

1996년 6월 20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화위원회

(푸른영상/기록영화제작소 보임/노동자뉴스단/독립영화협의회
/서울영상집단/영화제작소 청년)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같은 법 제26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자)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

2. 음비법 제25조 제1호와 제26조위반에 대하여

가. 음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란 '비디오물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업'에 관하여 대법원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바(같은법 제2조 제1호), "...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8.9. 88도998)라고 하였고,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당국으로부터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업"의 해석에 관하여도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간질병과 정신이상중세가 있는 환자측의 간청으로 2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었을 뿐 달리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이를 의료법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 보건범죄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5.29. 84도723)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사 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김 동 원

위 피의자의 변호인은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피의자는 영상교육과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영리단체인 '푸른영상'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노랑진경찰서 소년계 형사들은 1996. 6. 14.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푸른영상의 사무실에서 압수대상을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하는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상계동 올림픽' 등의 비디오물을 압수하여 갔고, 다시 오후에는 시범경찰관이 발부한 긴급구속장(죄명: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을 제시한 상태에서 푸른영상의 대표인 피의자를 구속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자), 제3호(제17조 제3항(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다는 것입니다(음비법 시행령 제4조). 이러한 시설요건은 어찌보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영상물제작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음비법이 요구하는 정규의 녹음실, 제작실, 녹화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비디오물뿐만 아니라 영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의 충분한 요건(즉 부실하지 않는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다. 실사 피의자가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작품 1편당 100개 내지 200개 수량의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구속까지 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제작한 작품의 내용은 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음비법이 원래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란 포르노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비법이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등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비디오물이 곧 포르노물이었던 시절에 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기술의 발달과 비디오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포르노물외의 건전한 비디오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임무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음비법 제25조 제3호 위반에 대하여

나. 하지만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음비법 제4조 소정의 등록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푸른영상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회원들에게만 배부됩니다(첨부한 자료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푸른영상의 회원모집권유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권유서에 따라 187번까지의 회원가입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일부만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푸른영상의 회원명단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신부님도 계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오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요청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무료로 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비보전의 차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요청하는 작품을 배부하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푸른영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푸른영상은 1편의 작품을 촬영하게 되면 100개 내지 200개 정도를 비디오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부해 왔습니다. 이미 압수된 장부에도 나타나듯이 회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배부되는 비디오물은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품 1편의 제작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비디오물을 10개 내지 50개 정도를 일정한 비용을 받고 넘겼다고 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제작하였다거나 업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더욱 문제인 것은 음비법이 비디오물제작업자에게 엄격한 시설요건을 요구하고 있

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더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 있으나, 일단 공연윤리위원회의 성격과 심의를 하는 내용에 비추어 이는 사전검열이며, 비디오물이 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점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적용된 위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위헌의 여지가 있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구속권한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음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가. 지난 4경 입법예고된 음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예외대상으로 '기획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공중에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푸른영상의 경우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영상의 경우 비디오대여점이나 비디오판매점에서 대여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일반공중에 판매, 시청제공 등을 할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보다는 회원용 또는 회원들의 영상물제작능력배양차원에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비디오물심의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른영상의 경우는 판매목적보다는 교육목적에 의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

가. 음비법에 의하면 비디오물은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한 형식인 비디오물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나. 음비법의 규정과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영화는 그 상영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첨부한 결정문 참조).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디오물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정부기관적인 성격이 강한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배포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므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이번에 개정된 음비법에서 음반부분만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라. 피의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피의자의 처는 임신중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두 자녀와 임신중인 처를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가족이 받을 충격은 별론으로 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회원모집권고서

1. 회원가입신청서

1. 회원명부

1. 재직증명서

1.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

1. 각종 기사

1. 변호인선임신고서

1. 주민등록등본

공중인가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장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만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연기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상관계

가. 피의자는 1978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1981년에 같은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영화현실감연구'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등 영상물 제작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엘리트층의 하나입니다.

나. 등록의무규정과 사전심의강제규정은 수준높고 사회에 유익한 영상물의 제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겁니다. 푸른영상은 실제로 수준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1'을 제작하였고, '상계동올림픽'과 같은 작품은 베를린영화제 포럼부분과 아마따영화제 비경쟁부분에 초청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또한 피의자의 영상교육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단체의 요청을 받아 영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평가되어 피의자는 민족예술인총연합 영화위원회 대표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중인가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장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등록일	분류기준	인원 자료실
	B)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사 건 국가보안법위반

피 의 자 김 동 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과 사건의 경과

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보건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인권영화제의 집행위원, 그리고 인권운동과 서준식무죄석방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 김경남목사)으로서 1997. 11. 25. 인하대학교에서 이적표현물인 비디오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위반의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피의자가 집행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권영화제는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주관하여 1996. 11.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회 영화제를 개최하여 서울에서만 연인원 15,000명 가량이 관람하여 성공리에 치루었습니다. 올해 제2회 인권영화제도 제1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1996. 6. 14.

11) 동대문구... 12) 동대문구... 13) 동대문구...
 서울지방법원 권중
 변호사 김기중
 피의자의 변호인

C:\HDATA\DW4\WGREEN.HWP

11) 동대문구... 12) 동대문구... 13) 동대문구...
 공중인가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장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관 김기중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이나 영화법의 예에 비추어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또한 김대중당선자와 집권당인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19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둔 상태이므로 새로운 정부에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것입니다.

라. 이처럼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하여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아니라, 구속까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가. 레드헌트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그 진상이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혹에 쌓여 있는 1948년의 제주도 4·3 항쟁의 진실을 미군정보고서와 같은 객관적 사료, 생존자들의 증언, 관련 교수 기타 연구자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기록영화일뿐입니다. 이러한 기록영화가 어떠한 의미에서 북한체제나 이념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첨부한 동국대 영화과 교수의 확인서, 레드헌트 시나리오 참조).

나. 피의자와 인권영화제 집행위원들은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나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중앙대학교 이충직 교수, 동국대학교 정재형 교수 기타 영화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레

되었는바, 영화배우 안성기, 이돈명변호사, 김진균서울대학교수, 정지영영화감독 등을 비롯한 2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여편의 인권관련 영화들을 발국하여 10여개국의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하고 상영허락을 받은 후, 외국영화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개월에 걸쳐 밤을 세워가며 번역을 하고 자막작업을 하여 순수한 비영리행사로 진행해 왔습니다. 레드헌트는 위와 같은 제2회 인권영화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상영되었고, 지방인권영화제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광주, 전주, 제주, 수원 등 11군데에서 상영되었습니다.

2. 음비법의 문제

가. 주지하다시피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다던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지식 및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인 하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물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지금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되었으나 본질적 성격은 동일함)에서 사전에 배포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은 1996. 11.

6. 음비법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결정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

마. 그러하기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97. 11. 20. 레드헌트의 상영과 관련하여 수사 기관이 청구한 인하대학교 압수수색영장을 이 영화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불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담당판사 김기영).

4. 정상관계

가. 피의자는 1978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1981년에 같은 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영화현실감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영상물 제작분야를 연구한 전문엘리트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한국민족예술인연합 영화위원회 대표이기도 합니다.

나. 피의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혐의사실의 성격상 인멸할 증거도 없습니다.

다. 어느 모로보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제1회 인권영화제 팸플렛

드헌트의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부산의 하늬영상이라는 영상단체가 제작하여 다큐멘터리 전문 종합유선방송의 하나인 '큐체널'의 주최로 1997. 4. 18. 개최된 제2회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제2회 서울다큐영상제는 당선작에 대하여 유선방송에서의 방영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제작자 자신조차 영화의 일반상영을 전제로 작품을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 더구나 이 영화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씨, 이회창씨같은 각 당의 대통령후보도 참석하여 관람한 부산국제영화제(1997. 10. 10. ~ 10. 18.) 출품을 위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부산국제영화제기간동안 수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였던 작품이기도 합니다(첨부한 부산국제영화제 팸플렛 참조).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이적표현물로 보는 것은 영화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베를린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라. 이 영화는 제주 4·3사건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객관적 기록의 형식으로 영상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한 점의 왜곡도 없이 역사학계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음은 작품을 직접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므로, 작품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판단도 내려져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작품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김동원에 대한 신문사항

1. 피의자는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중의 한 사람이지요. 인권영화제 집행위원들은 누구인가요.
2.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할 작품은 영화학과 교수 등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지요.
3. 부산의 하늬영상이라는 영화제작단체가 제작한 레드헌트도 중앙대학교 이충직교수, 동국대학교 정재형교수 등이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영하기로 한 것이지요.
4. 집행위원회는 인권영화제에 상영될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지요. 레드헌트에 관한 소개문은 집행위원중의 한 사람인 조광희변호사가 작성하였지요.
5. 레드헌트는 1997. 4. 18.에 종합유선방송국의 하나인 큐채널에서 주최하는 제2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에 출품된 작품이지요.
6. 레드헌트는 1997. 10. 10.부터 8일간 열린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되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지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된 모든 영화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레드헌트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7. 피의자는 레드헌트의 제작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그 제작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요.

- 1 -

1. 제2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와 영화제 규정

1. 인권영화제 관련 언론의 보도기사

1. 동국대학교 영화과 교수 정재형의 확인서

1. 레드헌트 시나리오

1. 부산국제영화제 팸플릿

1. 언론보도기사(영화제와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 구속관련)

1998. 1. 10.

위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창 국

이 석 태

김 형 태

조 용 환

김 기 중

도 재 형

인천지방 귀중

- 6 -

15.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레드헌트를 상영하였지요.

16. 인하대학교에서의 레드헌트 상영도 피의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영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영일에만 피의자가 참석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상영이 늦어져 피의자는 상영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지요.

17. 피의자는 다큐멘터리영화 제작단체인 '푸른영상'의 대표로 1997. 5. 29. 서울지방법원에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지요.

18. 하지만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단체에게는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지요.

19. 피의자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 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 소규모로 다큐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문화체육부의 입장을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바 있지요. 항소심재판에서의 사실조회에서 문화체육부는 비슷한 취지의 회신을 보내온 바 있지요.

20. 푸른영상은 제작한 다큐멘터리영화를 주로 회원에게 배포하였고 일반인에게는 특별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실비로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영업으로 비디오물을 배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소심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지요.

21. 피의자가 1998. 1. 9. 오전에 인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인천대학교 학생에게 푸른영

8. 인권영화제는 '인간을 위한 영상'을 모토로 하여 우리나라 영화문화에 깊이 배어있는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대중들에게 영상매체를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왔지요.

9. 그래서 인권영화제는 노동문제, 환경문제, 국가에 의한 폭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되 모든 상영을 무료로 하였지요.

10. 이와 같은 인권영화제 취지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한겨레신문이 발행하는 영화주간지 '씨네 21'과 월간영화잡지 '키노', 한겨레신문, 기독교방송이 인권영화제에 협찬을 하였지요.

11.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방에서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해 왔고, 제2회 인권영화제도 광주, 전주, 제주, 수원 등 11군데에서 개최되었지요.

12. 수사당국에서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을 1996. 11. 4. 구속한 이후에는 레드헌트의 상영요청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들어 훨씬 많은 곳에서 레드헌트가 단독으로 상영되었지요. 인하대학교에서 레드헌트가 상영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상영된 것이지요.

13. 서준식 집행위원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서른 다섯 정도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승훈신부, 구중서교수, 김상근목사, 김중배선생, 이돈명변호사, 이창복전국연합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하였지요. 피의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경남목사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었지요.

14. 이후에 레드헌트에 대한 상영요청은 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지요.

영화·비디오법 개혁의 필요성

지난 6월 14일 기록영화제작단체인 푸른영상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표 김동원씨에 대한 긴급구속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푸른영상을 비롯한 10여개의 독립영화단체와 영화작가들, 불교, 천주교 등의 인권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등이 중심이 돼 '포현의 자유 쟁취 및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이하 영비법 대책위)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영상 사건은 일개 단체에 대한 일시적 탄압이 아니라 과거 5,6공 정권때부터 '화업전야', '달린 교문을 열며' 등의 독립영화에 가해졌던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런일이 언제든지 재발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정부 시대에서도 포현의 자유는 전혀 신장되지 않고 있다'는 그간의 우려섞인 지적이 결국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 비영리 제작 단체인 푸른영상을 불법제작업자로 규정하고 모든 테이프와 기자재일체, 심지어 생명과도 같은 원본까지 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음반 및 비디오법(이하 음비법)은 최소 3년내지 8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에서 5,000만원사이의 추징금이 구형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분노에 앞서 우리의 서글픔을 느끼게 됩니다. 음란비디오를 단속하는 법으로 양심적인 독립영화인들을 탄압하는 판행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테이프들을 소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진시왕시대의 '분서갱유'에 비금가는 족거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푸른영상같은 독립영화인들에게는 정부나 문화재단에서 제작비를 아무조건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유통망-극장 상영, 비디오 대여점-을 거치지 않으면 등록, 심의, 판매에 대해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매체를 통한 사회비판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은 결코 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른영상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별첨자료 1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 6월 7일 개정발효된 음비법은 제작업등록, 심의, 판매에 있어 독립영화인들 뿐 아니라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일반시민들, 대학생들을 모두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7월 1일 개정발효된 영화진흥법 역시 영화학계, 법조계의 의견이 묵살된채 여전히 사전검열조항을 온존시키고 있으며 소형, 단편영화에 대한 예외규정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영·비법 대책위에서는 영화진흥법 및 음비법개정의 필요성을 시급히 느끼며 문제조항과 대안을 간추려 제시합니다.

상이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를 준 것도 이 학생이 푸른영상으로 연락하여 테이프를 사줬다고 하였는데 마침 피의자가 인천에 갈 일이 있어 테이프를 직접 갖고 나가 전달해 주게 된 것이지,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를 하게 된 것은 아니지요

22. 피의자의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23. 기타 필요한 사항.

F:\JD\9801\DONGWON.HWP

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급을 위반하여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게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19조(심의의 예외등) : ①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4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 국산비디오물중 교육·학습·종교 또는 산업·업무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경우

제25조(벌칙) : ① 3.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의 모든 비디오물이 반드시 공연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제22조 1항,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37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이미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이 계류중이고 개정된 음비법은 사전심의가 삭제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선 심의 조항이 음란비디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체부에서 염려하는 불법 음란 비디오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긴 합니다만, 애초 제작자를 밝힐 수 없는, 즉 음비법으로 처벌하기에 음란비디오들은 오히려 죄과가 너무 무거운 그야말로 지하 비디오들입니다. 따라서 음란 비디오들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심의와 처벌규정은 이들을 단속하지도 못할뿐더러 적당하지도 못합니다. 내용이 문제시 된다면 더욱 엄중한 단속과 형법, 즉 음란표현물일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체제저복선전물일 경우 국가보안법등으로 통제가 가능함으로 굳이 위헌의 소지를 무릅쓰고 사전심의의 의무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씨나 그의 작품을 상영하고 있는 국립현대박물관도 이조항에 의하면 명백한 처벌대상이 되며 취미로 만든 비디오를 돌려보거나 심지어 갖고만 있어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더구나 심의를 받기위해서는 10분당 8만원(심으로 4만원, 음반협회 단속료 4만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분짜리 비디오 기록영화의 예산이 100만원 미만인데 48만원의 심의료를 내야하는 꼴입니다. 영리목적의 비디오에 있어선 적당할지 모르지만 비영리 목적의 독립영화단체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업자에 한하기 때문에 미등록 제작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질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1. 비디오에 관한 사전심의는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하며
 2.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음반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는 폐지하고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심의를 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처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비디오는 이제 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손쉽게 제작 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과 목적도 꼭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태두리안에 그 모두를 담으려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시설기준을 임의로 마련해 놓고 그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법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카메라의 보급률과 VTR 2대만 있으면 편집이 가능한 비디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 6월 이전의 음비법 시행령은 제작실 내부면적 50평방미터 이상, 3/4"복사용 녹화기 3대 이상, 영상 및 음향분배기 5회선 이상등등 최소한 3억원이 소요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시설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최소 1억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있는' 사람만 영상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즉,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입니다.

특히 비디오 제작을 '업'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일종의 동호인 모임의 성격으로 제작하고 있는 독립영화단체들, 그리고 여러 주제에 대해 교육, 홍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나 영상교육단체들에게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개정된 시행령 4조 1항을 보면 기획·제작만하고 복사를 안하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체부 확인결과 독립영화단체들은 복사기가 없으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전적인 태도이지만 그렇다면 범형식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제 4조의 명칭은 '제작업자의 등록'이 아닌 '제조업자의 등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예외규정 2항 이하는 동어반복의 조항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복사기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1. 음비법의 제작업 등록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지침이라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의무가 있는 '업자'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개입이 우려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번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가 아니므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산하관청에 배포하거나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심의에 관한 조항

17조(심의) : ① 판매·배포·대여·시정제공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정제공하거나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정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

22 조
처벌규정

현대는 영상시대입니다. 과거 인류가 문자로 의사표현을 했듯이 앞으로는 영상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영상매체를 통제하여 제한된 사람들만 영상제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과거 중세시대 문자매체를 독점했던 봉건계급의 횡포에 버금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음비법은 지원·진흥정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거의 모든 비디오제작자및 제작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상산업과 영상기술매체의 발달로 누구나 비디오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많은 사람들을 범죄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및 관계기관에서는 그들중 사회 비판세력을 포적화하여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학계,법조계로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푸른영상'사건은 그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본보기일 것 입니다.

푸른영상 사건과 관련하여 문체부로 접수된 외국의 수많은 항의 서한들은 한결같이 문민정부의 문화민주주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유치하고 세계화로 나가고 있는 20세기말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걱정어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글은 덕수합동법률사무소 김기중변호사(567-2316)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문제는 MBC 시사대거진2580 '젓소부인과 상계동올림픽'(7월7일 방영)에 소개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쟁취 및 영화·비디오법

개편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장 호 (영화감독)

이 종 직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김 용 태 (사단법인민족예술인총연합사무총장)

영화제작소 청년/젊은영화/삼분의 이 // 노동자 뉴스제작단/서울영상집단/푸른영상/기록영화제작소 보임/다큐 0.7 // 퓨쳐아트/독립영화협의회 // 비디오로 만드는 세상/인천영상집단(준)/춘천영상모임 // 문화학교 서울/대전영화공방 쉼트/부산시네마떼끄 1/24 / 광주 영화로 세상보기 // 경인지역대학영화페연합 // 영화연구소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변 언론 위원회/불교인권위원회/천주교 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민주언론운동협의회/방송단일노조 건설 준비위원회/아시아 프레스/정보연대 썸/(29개 단체)

3. 이것도 어렵다면, 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제작업자, 수입업자 등 '업'자가 제작, 수입, 배급, 유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전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음비법 제4조와 제7조에 의한 등록업자 및 위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하여 공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수입과 반입 비디오물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의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에 관한 조항

제26조(벌칙) ; 제7조 제1항의 규정(유통관련업자)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2조 제1항 제1호(등록미필),제2호(수입추천미필),제4호(제조업권리 무취득)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한 자

→ 위의 범조항에 의하면 유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비디오를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나, 남의 영화나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일정한 벌칙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만든 비디오를 이웃에게 무료로 보여주어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범조항은 영화를 취미로, 혹은 장래의 직업으로 연구하고자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모든 영상 자료실 및 시네마테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관만 하고 있어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A라는 개인이 취미로 만든 비디오를 영상자료실에 있는 B라는 친구에게 주고 B가 그것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상영하는 경우도 A, B는 26조, 27조의 조항에 의해 각각 1,000만원,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비디오제작및 배포, 상영을 규제하고 있는 비디오법은 동호인들의 영상제작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결국 영상산업발達の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디오대여점,비디오방등 상업적 유통망을 통하지 않는 독립영화와 개인,시민단체들의 제작물들은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에 있어 처벌 예외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쟁취 및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소식지 3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5 TEL : 823-9124 FAX : 823-9125 하이텔 : 95ni 천리안 docupurn
E-MAIL : docupurn@mail.cybercom.co.kr url : http://kpd.cybercom.co.kr/blue 발행일 : 1996년 8월9일

대책위 소식

1. 대책위원회 운영회의가 열립니다. 8월17일 토요일 오후 1시 만예총

소속단체 대표와 회원 분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브라질 회의에 참가한 김명준씨의 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대책위 사업 평가와 앞으로 전망을 논의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

1. 브라질 회의 보고(오후1시) - 김명준
2. 운영위원회의(오후 3시)
 - ① 사무국 보고 - 기획실, 조직실, 정책실, 홍보실, 배지 결산
 - ② 운영위 안건 - 명칭문제, 독립영화제 기획, 대학영화제 운영기금 문제, 9-10월 계획
3. 거리상영회(오후 6시)
 - ※ 자세한 내용은 운영회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배지 결산을 합니다. 단체별로 결산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께욱

거리상영회

8.10일 5차 거리 상영회는 명동성당 앞에서 민가협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관계로 상영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홍보물만 배포하였습니다. 가능한 상영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명동일대가 민가협 행사로 장악(?)되어 대책위가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부득불 독립영화협회의 워크샵 회원들 15명이 명동 입구에서 홍보물 500부 정도를 배포하는 것으로 5차 거리 상영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가협 행사중 하루감옥 체험에 이장호 감독님(대책위 공동대표)과 변영주 감독이 참가하여 하루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이번 17일 6차 거리 상영회는 독보적인 씨네마 데크 활동을 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학교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등록에 관한 조항

제4조(제작업자의 등록) :

- ① 음반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영상편집기 1세트이상, 칼라모니터 3대이상, 2분의 1인치 복사용 녹화기 100대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4조(등록의 예외) :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제작만을 하고 복제등의 방법으로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연수기관이 자체교육·연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 종합유선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선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6. 관혼상제, 종교의식에 관한 것등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음반,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일반에게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정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

제25조(벌칙)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배포·대여·또는 시정제공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체부는 비디오로 작품을 제작, 배급하려는 모든 개인,단체에게 '비디오제작업자' 등록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자'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비디오란 영화의 하부구조, 즉 극장 상영이외의 방법으로 영화를 보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비디오카메라로 제작하는 경우는 주로 텔레비전 방영물, 기업체 홍보물, 그외 교육교재들입니다. 가정용 비디오카메라로 제작되는 경우는 대부분 취미활동이거나 영리성이 없는 실험영화, 기록영화들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예로영화가 비디오카메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때문에 비디오법이 있어야한다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며 이는 영화관계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는 비디오 제작업등록에 관한 법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영화관계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비디오법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히 연구조사중 입니다)

우리의 음비법은 음반과 비디오, 그밖에 플로피 디스켓, 게임팩등을 제작하는 업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이상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작방식과 내용이 전혀 다른 매체들을 하나의 법테두리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법의 공통분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물들입니다.

	8-13	

「푸른 영상」 김동원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

독립 영화 단체 「푸른영상」 비디오 테이프 압수 수색및 대표(김동원) 긴급구속 사건 개요

1996년 6월 14일. 08:00 - 11:00.

노랑진 경찰서 소년계 소속이라고 밝힌 형사 계장 정두수의 7명(대공과 소속 형사 정대식 노조 및 위장취업 전담반 소속 외1명)이 아침 8시경 동작구 신대방동 343 - 5호 청강빌딩에 위치한 푸른영상에 압수수색영장(692호 검사 이용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푸른영상 사람들이 출근한 다음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들은 대표인 김동원 감독에게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을 위반으로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곧바로 사무실에 소장해 있었던 복사 테이프들을 압수하였다.

압수·수색의 근거를 묻는 푸른영상 측의 말에 그들은 푸른영상에서 만든 불법비디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법정에서 얘기하면 된다고 질문을 묵살하였다. 계속되는 푸른영상 측의 질문에 불법 비디오 제작과 불법판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1000개 가량의 테이프(푸른 영상에서 제작한 모든 테이프 복사물)와 촬영장비 목록을 압수해 갔다.

1996년 6월 14일. 15:30 - 15:40.

압수수색을 끝내고 철수한 이후, 다시 오후 3:30 분경 노랑진 경찰서 소년계 소속 형사 4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한 후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 감독을 연행해 갔다. 형사들은 푸른영상 측의 영장제시 요구에 거칠게 대응하며 김동원 감독을 강압적으로 연행해 갔다. 영장내용을 자세히 보고자 요구하였으나, 형사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언급하며 직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대장 본 영장내용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을 위반으로 되어있었으나, 담당 검사가 정확히 누구인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1996년 6월 14일. 17:00 - 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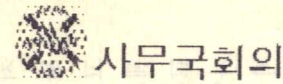
대표 김동원씨가 연행된 직후 오후 5시경, 노랑진 경찰서 소년계 소속 형사 3인이 의경 8-9인을 동행하고 들이닥쳐서 촬영 및 편집 기자재 일체를 압수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의 주이는 불법비디오 테이프에 관한 규제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건강한 영상문화를 만들고 있는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서 단순히 푸른영상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상단체의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저해하고 건강한 영상문화 발전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이후 사건에 대한 상황보고와 푸른영상의 입장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문의 및 상황 보고에 관한 연락처:

푸른영상 (전화: 823-9124, 팩스: 823-9125)



사무국회의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푸른영상 사무실에서 사무국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무국 보고

- ① 기획실 : 독립영화제 기획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검열을 받지 않았을 경우 상영할 수 있는 작품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장소 역시 명동 문화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 역시 치외법권지역이지 않는가? 타 영화제에 비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등 다양한 문제들 안에서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면서 운영위에 영화제 기획의 장단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 ② 조직실 : 새롭게 생긴 애니메이션 단체 개소식에 참가하였고 지방과 연락망을 구축 중이다. 그리고 컴퓨터 동호회와 접촉을 준비중이다.
- ③ 정책실 : 정책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열릴 영화제 토론자료를 만들고 있다.
- ④ 홍보실 : 매주 수요일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다. 아직도 Mailing list에 올라가지 않은 단체가 많이 남아있다. 소식지 내용에 대한 새로운 기획안이 요구된다. 24일 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맥브라이드 회의에 대책위 성명서와 서명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자.

2. 영화제 관련

독립영화제 기획모임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회 개원 전에 영화제가 갖는 여론 환기 작용, 그리고 6월 부터 지금까지 대책위의 활동을 다시금 정리하고 힘을 돌구는 역할로서 영화제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운영위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모색할 것이다.

다음 사무국회의는 운영위에서 만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알림

8월 10일 푸른영상의 압수 장비와 테이프 일부를 찾아왔습니다. 기계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편집용 컴퓨터 작동이 불안정 합니다. 압수물품들은 가환부신청을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위참가단체는 이렇습니다.

영화제작소 청년/젊은영화/삼분의 이 // 노동자 뉴스제작단/서울영상집단/푸른영상/기록영화제작소 보임/다큐 0.7 // 퓨쳐아트/독립영화협의회 // 비디오로 만드는 세상/인천영상집단(준)/춘천영상모임 // 문화학교 서울/대전영화공방 컬트/부산시네마테크 1/24 / 광주 영화로 세상보기 // 경인지역대학영화페연합 // 영화연구소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변 언론 위원회/불교인권위원회/천주교 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민주언론운동협의회/방송단일노조 건설 준비위원회/아시아 프레스/정보연대 썩/(29개 단체)

* 팩스를 통해 자료를 받는 분 중에 통신 ID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음반 또는 비디오물
2. 교육, 연구기관이 자체 교육 연수의 목적에 사용할 음반 및 비디오물
3. 직접 자기수요를 위하여 반입하는 20개이내의 음반 및 비디오물(법18조 1항 각호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4. 우리나라로 이사할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법 18조1항각1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17조(심의)

- ① 판매 배포 대여 시청각제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 판매 배포 대여 등의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반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공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등급을 위반하여 연소자에게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윤은 18조1항각호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음반을 심의 할 수 있으며 당해 음반제작자는 심의결과를 준수해야한다.
- ⑤ 공윤은 음반 및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19조(심의의 예외 등)

- ① 예외경우
 1. 법률 4조2호 내지 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단체 제작, 관혼상제등 일반에게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
 2. 국산비디오물 중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경우
- ② 심의여부를 공윤에 확인요청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령으로 심의를 받았으면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8조(심의기준)

- ① 공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 받은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부분을 삭제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연소자 관람 불가 내용/ 시청연령 세분화할 수 있다.
 1.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 양을 해칠우려가 있는 내용
 2. 연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연소자에게 성격행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연소자에게 폭악성 잔혹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행령 20조(심의기준)

- ① 세부 심의 기준
 1.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 정리

제1조(목적)

이 법은 음반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음반 :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산업용 실험테이프는 제외)
2. 비디오물 : 영상(음의 수반어부와 무관)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 테이프 형태의 것(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 또는 遊技機具 및 그 機版은 제외)
3. 음반 제작업자 :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4. 비디오물 제작업자 : 비디오물이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5. 제작 :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
6.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
가. 음반판매업 나. 비디오물 판매업 다. 비디오물 대여업 라. 비디오물 감상업

제 3조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진흥시책의 수립)

문체부 장관은 음반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제작업자의 등록)

- ① 음반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 제작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예외(시행령 4조) :

1. 기획제작만 하고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 연구기관이 자체교육, 연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방송법인,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선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6. 관혼상제, 종교의식에 관한 것 등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음반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일반에게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
- ②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

- ① 수입할 때는 공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4조 ; 외국 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후 이를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러나 법률 18조 1항 각호1(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는 제외) 유통업자에게 한하여 수입 추천을 할 수 있다.

제16조(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반입)

- 누구든지 반입할 때는 공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예외 : 시행령 제16조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가액을 추징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않고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
2. 15조 1항 2항의 --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 제조한 자
3. 17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심의)
4. 제조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조한 자

제26조(벌칙)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7조(벌칙)

① 300만원이하의 벌금

1.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3. 제21조1항 또는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수거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거부 장해 또는 기피한 자
4. 22조1항1호2호4호의 규정(금지조치)에 해당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 대여 배포 또는 시청 제공하거나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한 자

2. 범죄를 정당화 하는 내용 또는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 비방하는 내용
4. 신앙 종교의식등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5. 준비속 노인 아동 여성의 학대를 정당화 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또는 물건을 허위로 묘사하는 내용
7. 국가 또는 국기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8. 제명이 저속 또는 외설적이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자극적 또는 음란스럽게 과장표현된 경우

② 세부 심의기준

1. 연소자의 흡사나 아동의 유괴를 정당화 하는 경우
2. 장애인을 묘사함에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거나 열등의식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
3. 연소자의 흡연 또는 음주를 정당화 하는 경우
4. 사행심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
5. 매음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6. 범죄를 묘사함에 있어 정의감을 해하는 내용
7. 법령으로 연소자에게 금지시킨 행위를 정당화 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20조(납본)

①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조하거나 외국음반 또는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한 자는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기 전에 음반 및 비디오물 1개를 문체부 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 대여 금지조치 등)

① 문체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하거나 유통연합업자에 대하여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금지를 명하거나 당해 업소의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당해 음반 비디오물 또는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기 또는 시설물에 봉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1. 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
 2. 15조, 1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 제조 또는 반입된 비디오물
 3. 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4. 제조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음반및 비디오물
- ② 음반 및 비디오를 수거할 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않고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조한 자
 2. 15조 1항 2항의 --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 제조한 자
 3. 17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심의)
 4. 제조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조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음반 비디오물과 그 제작에

푸른영상 작품 목록

< 빈민 >

제목	내용	상영시간/제작년월	연출/기획
상계등올림픽	강제로 삶의 자리를 빼앗긴 상계동 철거민들의 힘겨운 투쟁과정을 생활하며 만든 작품	27분/ 1988년 (1만3천원)	김 동 원
벼랑에선 도시빈민	도시빈민들이 처한 불안정한 취업구조, 사회에 대한 좌절감, 대책없는 재개발 등 빈민들이 처한 현실을 소개한다	29분/ 1990년 (1만원)	김 동 원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회
행당동 사람들	재개발이 시작된 93년 가을부터 강제철거의 과정에서 삶의 자리를 잃고 살아가는 행당동(하왕2-1지구)사람들의 고통과 사랑, 공동체에 대한 꿈을 기록한 영화.	31분/ 1994년 7월 (2만5천원)	김 동 원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회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담골공원에서 살아가는 부랑자들, 그들의 삶과 내면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41분/ 1994년 11월 (2만5천원)	박기복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원조를 호소하는 작품	25분 / 1993년 1월 (1만원)	편집 김동원

< 인권 · 통일 >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분단의 역사만큼 오랜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삶과 그 뿌리를 그리고자 하는 시리즈물.	85분/1995년 2월 (2만5천원)	김태일
약속하나 있어야겠습니다	故 강경대 열사 4주기를 맞아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다.	50분/1995년 5월 (2만5천원)	오정훈
하나가 되는 건 더욱 커지는 일이다	故 문목사 89년 방북의 과정을 통해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와 문목사의 통일관을 고찰하고 있다.	43분/1995년 8월 (2만5천원)	김동원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민가협 어머니들의 활동을 통해 이땅의 양심수들의 실태와 인권상황을 되짚어 본다.	48분/1995년 12월 (2만5천원)	김태일

< 노동 >

원진별곡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업병 실태와 직업병 인정을 위한 긴 투쟁과정을 2년여동안 기록한 작품.	38분/1993년 9월 (2만5천원)	김태일
못다한 이야기	양쪽 손가락을 다친 네팔 노동자 반자데의 한국생활을 그의 입을 통해 들어본다.	23분/1994년 7월 (2만5천원)	차기성

살아있는 영화 생생한 감동

푸른영상

푸른영상은

건강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영화인들이 모인곳
함께 살아가야 할 가난한 이웃들,
잊혀져서는 안되는 소중한 사건들을 기록영화로 만들고 있는 곳
입니다.

약 30여편의 작품을...

삶의 자리를 빼앗긴 상계동 철거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만든

상계동 올림픽

여성의 상품화 과정과 관념을 여성의 시선으로 기록한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인권과 분단의 현실을 다룬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그외에도 일상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러 편의 작품들

영상 교육

공기처럼 둘러싼 영상 환경속에서
영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누구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달려가 영상읽기와 쓰기를
함께 합니다.

영상시대는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푸른영상의 작품은 대여점에서도 방송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검열을 받지도 흥행을 목적으로 만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푸른영상은 독자적인 관객과 만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이 바로 푸른회원입니다.

작품을 함께 보고 토론하며 느끼는 사람들

푸른영상의 소중한 제작자이자 관객이며 비평가

살아있는 영화, 생생한 감동을 보다 대중화 하는 사람들

푸른영상은 사람의 열정과 애정이 느껴지는 따뜻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 156-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5 Tel 823-9124 Fax 823-9125

< 여성 · 가족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매춘관광의 실태를 제주, 태국, 일본현지에서 취재, 기록한 작품	59분/1993년 6월 (2만5천원)	변영주
결혼. 가족. 그리고 나	삶에서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건강한 결혼생활을 이루려는 신혼부부들의 이야기	40분/1995년 5월 (3만5천원)	정현주 / 한국가족상담 교육 연구소
결혼전 이야기	결혼을 앞둔 한쌍의 예비부부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제도적, 심리적 갈등을 다룬 작품.	41분/1993년 6월 (2만5천원)	박현선
노인. 또하나의 시간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일상과 자기 고백을 통해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더이상 가족의 책임일 수 만은 없는 노인문제의 현실을 짚어 본다.	22분/ 1995년10월 (2만5천원)	정현주

< 환경 >

하느님 보시니 참 좋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오염 실태를 성서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	59분 /1991년 (1만원)	김동원 / 천주교정의 평화위원회
----------------	---------------------------------------	---------------------	-------------------

< 미디어 >

미디어 숲속의 사람들	영상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TV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드라마다큐로 구성한 작품. 1부 드라마 : TV의 포로가 된 한 인간의 일생 2부 다 큐 : TV와의 전쟁	36분/ 1995년5월 (2만5천원)	김동원 / 크리스찬 아카데미
-------------	--	-------------------------	-----------------

< 장애 >

엄마 아빠 할수 있어	정신지체 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를 위한 조기교육시리즈	5시간 30분 총15편 / 1989년 (10만원)	김동원/ 서강커뮤니케이션센터
장애예방, 이렇게 합시다	여성들이 장애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전후 알아야 할 지식을 다룬 교육용 비디오.	30분 /1993년 (5천원)	김동원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학교가는 길	자폐아를 둔 가정의 문제와 그 갈등을 16mm film 극영화로 제작한 독립영화	25분 / 1992년 (2만5천원)	김종규 / 제작:영상집단 '우리'

< 기 타 >

야고보의 5월	세례의 의미를 드라마형식으로 조명.	15분 / 1987년 (1만원)	김동원 / 서강커뮤니케이션센터
---------	---------------------	----------------------	------------------

○○○○ 상영일정 ○○○○

날짜	단체명	날짜	단체명
7월 27일	노동자 뉴스 제작단	8월 3일	서울영상집단, 보임
8월 10일	독립영화 협의회	8월 17일	문화학교 서울
8월 24일	청년	8월 31일	퓨처아트

○○○○ 지금 행동하십시오 ○○○○

■ 지금 명동성당앞에서 '표현의 자유 쟁취와 음반및 비디오법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셔서 서명을 해주십시오.

■ 문체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항의전화를 합니다(TEL : 720-4967, FAX : 739-8196)

푸른영상의 기자재및 테이프 압수는 부당하다

영상물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영화 상영하는 동안, 대책위 활동자금 마련을 위한 냇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독립영화 협의회	푸른영상	노동자뉴스 제작단
서울영상집단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영화제작소 청년	젊은 영화
퓨처아트	비디오로 만드는 세상	한겨레 영화학교	문화학교 서울
인천 영상집단(준)	경인지역대학영화페연합	정보연대 SING	아시아 프레스
한국영화 연구소	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언론 운동 협의회	방송단일 노조 건설 준비위원회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화·비디오 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5 ◎ 전화 : 823-9124 ◎ 팩스 : 923-9125
 ◎ 이메일 : 95nl ◎ 전리안 : docupum ◎ 인터넷 : docupum@mail.cybercom.co.kr
 ◎ 웹 : http://kpd.cybercom.co.kr/blue



독립영화 거리 상영회

지난 6월 14일, 노량진 경찰서 소년계 소석 형사들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중 심의, 판매, 그리고, 배포 조항위반을 이유로 '푸른영상'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푸른영상'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후 1000여개 가량의 테잎(푸른 영상에서 제작한 모든 테잎 복사물)과 4000 여 만원 상당의 촬영및 편집 기자재 일체를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김동원' 푸른영상 대표를 긴급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푸른영상을 비롯한 10여개의 독립영화단체와 영화작가들, 불교·천주교등의 인권위위노히,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등이 중심이 돼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화·비디오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습니다. 푸른영상 사건은 한 단체에 대한 일시적 탄압이 아니라 과거 5,6공 정권때부터 '파업전야', '단히고문을 열며' 등의 독립영화에 가해졌던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정부 시대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전혀 신장되지 않고 있다'는 그 동안의 우려적인 지적이 결국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비영리 기록영화제작단체인 푸른영상을 불법제작업자로 규정하고 모든 테이프와, 기자재 일체, 심지어 생명과도 같은 테이프 원본까지 압수했습니다. 또한 현행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최소 3년내지 8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추징금 구형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분노에 앞서 서글픔을 느끼게 합니다. 음란 비디오를 단속하는 법으로 양심적인 독립 영화인들을 탄압하는 만행은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테이프들을 소각하겠다고 하는 데 이는 진시왕 시대의 '분서갱유'와 한치 차이도 없는 폭거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독립 영화인들은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시민들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하여 과연 이런 작품들이 불법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독립영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명동성당앞에서 만날 것입니다.

시간 : 매주 토요일 7시

장소 : 명동성당 앞

작품 : 음비법의 문제점을 다룬 2580의 비디오물, 독립영화 단체의 작품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화·비디오 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3-5 ◎ 전화 : 823-9124 ◎ 팩스 : 923-9125
 ◎ 이메일 : 95nl ◎ 전리안 : docupum ◎ 인터넷 : docupum@mail.cybercom.co.kr
 ◎ 웹 : http://kpd.cybercom.co.kr/blue

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영·화·비·디·오·법·을·폐·지·하·라.

■ 독립영화 거리 상영회 취지문

최근 '다큐멘터리 제작단체인 푸른영상의 대표가 구속되었다 풀려나고 제작 장비 일체가 경찰에 의해 압수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영화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체제 전복을 기도한 것도 음란 비디오를 제작한 것도 아닌데, 단지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를 묵묵히 카메라에 담을뿐인데 정부는 이 단체가 등록도 하지않고 심의도 받지 않는 불법단체라고 규정지었다. 사전심의로 영화인들의 창작의지를 말살시키더니 급기야는 영화문화의 토양이 되는 독립영화단체의 실험정신과 비판의식에마저 탄압의 칼날을 들이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7월에 시행령이 발표된 영화법중 단편, 소형 영화에 대한 심의조항은 영화발전의 토대가 되는 단편, 소형 영화를 법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묶어 놓았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우기 사회 각각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하는 이른바 문민정부라는 상황 아래서,민주적 문화환경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젊은 영화인에 대한 단속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문화적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번쯤 비디오 가게를 가보라. 국산 비디오 영화중 대다수가 애로물임을 볼 수 있다. 모든 시민들은 애로물 밖에 보지 않을까? 아니다. 문제는 법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등록도 할 수 없고 제작도 할 수 없다. 만드는 일이란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지 않는 제작이란 이미 제작이 아니다. 문체부는 혼자보는 영화는 등록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 시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도 심의 실질적으로 검열-를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비디오라는 건강한 영상문화가 등장하고 사회비판적인 내용의 작품들이 제작되어 사회가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영화·비디오물에 관한 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이런 사실들을 함께 고민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거리상영회를 개최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저항정신과 실험정신으로 묵묵히 작업하는 젊은 영상인들이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시민들과 함께 보는 자리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직접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작가에게 자유롭게 만들 권리를 그리고 시민에게 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의 문제점

[등록조항]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이하 음반법 제4조에는 '음반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디오로 작품을 제작 배급하려는 모든 개인, 단체는 '비디오제작업자'로 등록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비디오 제작업 등록에 관한 법이 이에 없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제작하는 경우는 주로 텔레비전 방영용 기업홍보용, 개인이나 소모임의 작품등입니다. 특히 영리성이 없는 실험영화, 기록영화를 만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로 비디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단체들까지 '비디오제작업자'로 등록을 하게 하고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는 이제 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손쉽게 제작 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과 목적도 꼭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안에 그 모두를 담으려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비디오물 제작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시설기준에 의해서 최소 1억여원의 자본이 있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험영화, 기록영화를 만드는 개인·단체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있는' 사람만 영상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심의조항]

음반법 16조에는 '판매·배포·대여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디오물이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제22조 1항,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37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내용입니다. 이미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이 계류중이고 개정된 음반법은 사전심의회가 삭제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선 심의 조항이 음란비디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체부에서 염려하는 불법 음란 비디오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애초 제작자를 밝힐 수 없는, 즉 음비법으로 처벌하기에 음란비디오들은 오히려 죄과가 너무 무거운 그야말로 지하 비디오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디오들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심의와 처벌규정은 이들을 단속하지도 못할뿐더러 적당하지도 못합니다. 내용이 문제시 된다면 더욱 엄중한 단속과 형법,즉 음란표현물일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체제전복선전물일 경우 국가보안법등으로 통제가 가능할로 굳이 위헌의 소지를 무릅쓰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나 그의 작품을 상영하고 있는 국립현대박물관도 이조항에 의하면 명백한 처벌대상이 되며 취미로 만든 비디오를 돌려보거나 심지어 갖고만 있어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더구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10분당 8만원(심의료 4만원,음반협회 단속료 4만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분짜리 비디오 기록영화를 만드는데 100만원 미만이면 되는데 48만원의 심의료를 내야하는 꼴입니다. 영리목적의 비디오에 있어선 적당할지 모르지만 비영리 목적의 독립영화단체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4조에 의해 등록한 업자에 한하기 때문에 미등록 제작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질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판매, 배포, 대여, 시청제공에 관한 조항]

음반법 제26조에는 '유통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자는 2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비디오를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나, 남의 영화나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일정한 벌칙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만든 비디오를 이웃에게 무료로 보여주어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법조항은 영화를 취미로, 혹은 장래의 직업으로 연구하고자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모든 영상 자료실 및 시네마테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관만 하고 있어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비디오제작및 배포, 상영을 규제하고 있는 비디오법은 동호인들의 영상제작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결국 영상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